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Commission ontarienne des
droits de la personne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후속 보고서

2009 년 4 월

영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간결체 및 전통체) 판도 있습니다.

요청하면 다른 판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판: www.ohrc.on.ca

Disponible en français

목차

보고서 개요	4
배경	5
2008/2009 년 낙시철	10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4
조사 결과	19
주석	22
부록 A - 2007 년도 발생 사건 목록	23
부록 B - 중오범죄 자원 기관	25
부록 C - 대책 일람표	28

ISBN - 978-1-4249-9601-8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의 목표는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에 대응하여 온타리오 주 전역의 22 개 관계기관이 수립한 각종 대책의 진전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 년 낚시철 전 또는 중에 이루어진 몇 가지 활동을 요약한 것이며, 이 중 상당수가 위원회의 조사활동 중에 수립된 대책의 결과입니다:

- 온타리오 주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 – ‘OPP’)과 요크 지역 경찰서 (York Regional Police – ‘YRP’)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핵심지역에서의 순찰활동을 증강했습니다.
- 다수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 YRP 와 OPP 가 공조하여 포스터 캠페인을 수립하고, 출신배경을 막론한 모든 낚시꾼에게 ‘두려움 없이 낚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안전요령을 제공했습니다.
- 온타리오 주 낚시사냥연합회(Ontario Federation of Anglers and Hunters)는 누구나 인종에 상관없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누가 법을 위반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공지했습니다.
- 2008 년 6 월 8 일, YRP 는 조지나 시, OPP 및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MNR’)와 공조하여 조지나 시에서 첫 번째 ‘안전한 연안낚시 및 정보의 날(Safe Shores Fishing and Information Day)’을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개최했습니다. 그 목표는 특히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새해 낚시철에도 모든 낚시꾼이 심코 호 연안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 아시아계 캐나다인 회원이 많은 온타리오 주 내 낚시 및 사냥 클럽들이 세미나를 열고(세미나 제목: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세미나’) 온타리오 주의 낚시 법규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괴롭힘 또는 폭행을 피하는 방법(낚시를 중단하고 낚시터를 떠나는 등의)과 911 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MNR 은 위원회와 공조하여 공원보호국 경찰관 및 공원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인종구분 및 인종 관련 항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 조지나 시는 다양성 및 평등성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체가 인종주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백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는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Coalition of Municipal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가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YRP 는 중오범죄에 관한 경찰관 교육 프로그램에 낚시꾼 사건 사례를 도입했습니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낚시꾼 사건 사례,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에 대한 토론을 교과과정에 추가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 ‘MAG’)는 증오범죄 기소에 관한 인식을 주제로 70 명의 검사를 교육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위원회는 MAG 와 공조하여 증오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배경

2007년 12월에 발표된 위원회의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의 기초 조사결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8월, 한 중국인 친구와 함께 공유지에 속한 수로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이 우리를 쫓아냈다... 여기는 공유지라고 했더니[그 사람은] 물에 빠뜨려버린다고 하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줄 알아.” 하고 우리를 위협했다. 우리는 말썽이 나는 게 싫어서 그곳을 떠났다.

2007년 9월, 위원회는 온타리오 주의 몇몇 호수 및 다리에서 발생한 심상치 않은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코 호 및 그 연안에서 레저 낚시를 하던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에 대한 폭행 및 언어적 폭력이 신고된 것이 이 사건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또는 아시아계 캐나다인과 함께 낚시하던 사람들이 표적인 것 같았고, 일부 지역의 폭행 신고는 아시아 캐나다인에 대한 인종비방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및 중국어 미디어가 이 사건들을 집중조명하고 아시아계 캐나다인 집단들이 이 사건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온타리오 주 남부 및 동부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도 밝혀졌습니다. 2007년 11월,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조사’). 조사는 *인권법(Human Rights Code - ‘법’)* 제 29조에 의거한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역사회의 긴장 또는 갈등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그러한 긴장 및 갈등의 근원을 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제도 및 활동을 장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목표는 사건들의 영향과 조직적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적절한 관련기관과 연계시켜주고, 인종주의 및 인종구분에 대한 교육 및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공공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긴장 및 갈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 관계기관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국계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토크쇼 사회자가 방송국에 전화를 건 청취자들에게 낚시에서의 체험에 대해 물었을 때, 네 명이 낚시 중에 괴롭힘을 당한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는 토론토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법률상담소(Metro Toronto Chinese and Southeast Asian Legal Clinic - MTCALC)와 공조하여 전화 핫라인을 개설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폭행 조사 - 기초 조사결과(Preliminary Findings: Inquiry into Assaults on Asian Canadian Anglers)*에 여러 가지 놀라운 낚시 체험담이 실렸습니다. 언어적 폭력, 낚시도구 훼손, 돌 던지기, 신체적 폭행 등의 다양한 체험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인종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10 월 초부터 11 월 중순까지 라이스 호에서 배를 타고 낚시했다. 이 한달 반 동안 평균 두 번 정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나와 대뜸 “fxxking 중국놈이 우리집 뒷마당을 침범한다”고 소리를 지른다(때로는 “fxxking 베트남놈” 또는 “fxxking 한국놈”이라고도 한다).

이 보고서에는 대부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07 년에 경찰에 신고된 11 건의 사건도 실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부록 A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루된 심각한 사건도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한 명이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치료불능의 증상을 입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잠재적 증오범죄로 간주되었으며, 여러 경찰서의 증오범죄 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여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현재 아직도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들은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원회는 낚시하러 가기가 두렵다든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때 행동을 달리하고 안전을 도모해야겠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몇 신고자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 등, 캐나다가 표방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캐나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저해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괴롭힘 또는 폭행 체험으로 인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인종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인종주의 지역사회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인종주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자치체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선출된 지도자, 정부관리, 경찰 등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괴롭힘은 제한된 천연자원의 보호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온타리오 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의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의 바탕이 되는 천연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지합니다. 누구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천연자원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낚시 법규를 잘 위반한다면 지역사회의 ‘이단자’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요주의 대상이 되거나, 아시아계 캐나다인이므로 낚시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권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법적 낚시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괴롭힘 및 폭행 사건을 그러한 인식에 따른 좌절감의 당연한 결과라고 합리화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한 폭행 또는 자경행위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주장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들이 한결같이 피해자가 낚시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007년 9월, 온타리오 주 헤이스팅스의 한 다리 밑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일컫는 인종비방성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물고기 도둑’이라고 묘사한 낙서였습니다.

천연자원 보호 및 불법 낚시를 둘러싼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에 긴장이 존재할 경우, 위원회는 특정 민족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속화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노력, 행동의 변화, 가해자에 대한 문책 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요크 지역의 경우, 요크 지역 경찰서는 30 일간의 비밀작전 ‘낚시꾼 프로젝트(Project Fisher)’를 실시하여, 아시아계 캐나다인 경찰관들이 몇몇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다리 밑에서 야간에 평복 차림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첫날 밤 작전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안에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차에 탄 사람들로 부터 인종주의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낚시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탄 픽업 트럭이 지나가면서 ‘집에 가라’ 하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내가 달갑지 않은 모양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내가 못마땅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 피부색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주로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요크 지역 경찰서장 Armand La Barge는 “그런 증오행위는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어느 지역사회에서도 발 붙일 곳이 없다”면서 폭행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표명했습니다.¹

관계기관과의 협의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상대로 한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문제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21 개 기관과 협의했습니다. 주요 기관은 지방자치체, 정부부처, 교육청, 지역사회 단체, 낚시꾼 단체, 경찰서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50 여 가지의 각종 대책을 이끌어냈으며, 자체적으로 7 가지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이 체험하는 안전문제에 관한 단기 프로젝트에서 인종주의, 인종구분 및 증오범죄 문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장기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몇몇 지역사회 및 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사건을 규탄했으며, 다수의 지역사회 및 기관이 위원회 및 경찰과 공조하여 인종주의 사건을 예방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인종주의에 대한 ‘최선의 대책’의 범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관계집단

이 문제가 아시아계 캐나다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위원회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우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소수민족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홍보는 위원회의 새로운 지침 및 장치의 체계적 운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조사 핫라인을 개설하기 위해 토론토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법률상담소와 공조하는 한편,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사회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변호사와 교육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관계집단(Community Reference Group)과도 공조했습니다. 지역사회 관계집단은 일련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 관계집단은 조사와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면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문제 및 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 관계집단은 각종 대책과 그 진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원회 웹사이트 www.ohrc.on.ca 에 보고서 링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2008/2009 년 낚시철

요크 지역 경찰서, 온타리오 주경찰, 낚시 협회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에 따르면, 2007 년 가을 이후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상대로 한, 공식적으로 신고된 괴롭힘 또는 폭행 사건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8/2009 년 낚시철에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년 3 월, 온라인 낚시 협회 소식지에 ‘우리 모두 중국인 낚시꾼을 환영합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의도는 비중국인 낚시꾼과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중국인 낚시꾼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낚시꾼에게 접근하여 잡은 물고기와 낚시 면허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집단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오히려 괴롭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불법 낚시꾼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실린 후 2008년 4월에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공식적인 사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브래드퍼드에서 낚시하던 아시아계 캐나다인에게 법집행관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여 유효한 낚시 면허가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요크 지역 경찰서의 중재에 의해 이 기사는 웹사이트에서 제거되었습니다.

- 2008년 5월 11일 온타리오 주 커크필드 근처 트렌트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일단의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게 한 남자가 접근하여,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낚시꾼 중 한 명을 떠밀어 물에 빠뜨렸습니다. OPP가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가해자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2009년 1월 31일, 일단의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이 온타리오 주 서턴에서 얼음낚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접근하여 “이 호수는 내 소유”라면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욕을 하고, 자동차로 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나중에 이 낚시꾼들은 MNR에 전화를 했고, 이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크 지역 경찰서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지나 시장은 이 사건에 대응하여 낚시꾼들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전에 겪었던 일을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 2007년 여름 온타리오 주 뷰들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고에서, 신고자 여성은 친구들이 물고기가 든 양동이를 뒤집는데 한 남자가 욕을 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 일본으로 돌아가” 하고 고향을 질러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친구가 들고 있는 낚싯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 스스로 중국계 캐나다인이라고 밝힌 한 남자는 2년 전 여름 피터버러 시에서 친구들(한 명은 중국계 캐나다인, 다른 한 명은 유태계 캐나다인)과 함께 공공 선착장 근처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할 때 겪은 일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침대 패거리가 있었는데 다 백인이었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길 건너편에 있는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계속 돌을 던졌다. 서너 명이 우리를 쫓아 길을 건너왔다. 그들이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친구에 대해 대략 ‘재, 유태인 아냐? 왜 웃는 거야?’ 하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분명한 건 그들이 내 친구의 인종에 대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그들이 내 친구에 대해 한 말로 판단할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인종주의적인 발언이었다.”

2007년에도 그랬듯이 YRP는 낚시꾼을 괴롭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비밀작전을 폈습니다. 다행히도 30일간 지속된 이 작전은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 작전에 참가한 경찰관 중 한 명의 진술입니다:

“‘안전한 물가 프로젝트(Project Safe Shores)’의 목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작전을 통해 해당 지역이 사실 일반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2008년 낚시철에 신고된 사건은 전년도보다 적었지만, 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신고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중오범죄에 대한 공공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다중언어 서비스 확립 등, 신고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²

중국인 신규이민자 회원이 많은 한 낚시 협회의 회원의 진술에 따르면, 여러 사건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은 아시아계 낚시꾼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 영어를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들은 신고하는 대신 나에게 이야기한다.

캐나다의 다문화적 국가이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운영되는 경찰 핫라인이 있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아시아계 낚시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영어를 못하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후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중오행위 사건 신고 건수가 적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8년 낚시철에는 온타리오 주 전역에서 낚시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니다. 날씨도 나쁜 데다 기름값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 즐겨 다니던 낚시터를 잘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사회 단체의 일원들은 위원회의 조사와 여러 기관(특히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니다. 이 점에서 미디어의 집중적인 취재도 한몫 했습니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입니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낚시꾼의 안전이 증진되고, 인종주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괴롭힘 행위가 억제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의 증언입니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작년에 귀 위원회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일이 2년 전에 일어났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각종 대책의 진전상황은 부록 C의 일람표에 나와 있습니다.

각 기관이 수립한 대책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는 다음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1. 방안이 시행되었는가?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2. 해당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는가?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는가?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4. 해당 기관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는가³?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거의 다 각종 대책을 시행했거나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인종주의 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안전과 공공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부처가 조사에 대응하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일부는 이 문제에 매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일부는 다소 완만하게 대처했습니다. 긍정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천연자원부입니다. 2009년도 낚시 법규에 삽입된 메시지는 레저 낚시에서의 인종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인종차별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각종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한편, 진행 중인 시책에서 반차별 및 반인종주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진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몇몇 기관은 반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한층 더 촉진하거나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증오행위 사건과 낚시꾼 사건 조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OPP 와 YRP 사이에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피터버러 및 요크 지역의 인종관계 위원회와 증오범죄 위원회는 경찰, 정부 대표(MAG 및 MNR) 및 교육기관과 공조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 대한 일부 기관의 종합적 대응책의 예입니다:

예 #1: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

- 2007 년 가을에 낚시꾼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그를 규탄하는 공공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시당국은 지역사회 내의 인종주의의 타파를 목표로 지방자치체를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Coalition of Municipal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 ‘CMARD’) 가입 동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MARD 가입 결정은 장기적인 반인종주의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 OPP 와 공조하여 폭행사건 발생 지역의 순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 낚시꾼 사건에 대해 밝히고, 인종주의 및 차별은 용인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시당국의 각종 대응책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청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위해 자금조달 창구를 조사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가 아시아계 캐나다인에게 안전한 야외활동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중국어 미디어와 공조할 계획입니다.

예 #2:

조지나 시

- 낚시꾼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그를 규탄하고 지역사회 지도자 및 교육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 소수민족 사회 대표들과 공조하여 평등및다양성 위원회(Equity and Diversity Committee)를 설립했습니다.
- 시당국은 또한 CMARD 가입 동의를 통과시켰습니다.
- 평등및다양성 위원회는 인종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백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YRP, OPP 및 MNR 과 공조하여 ‘안전한 연안낚시 및 정보의 날(Safe Shores Fishing and Information Day)’을 개최했습니다.

예 #3:

요크 지역 경찰서

-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학교안전 담당 경찰관들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 및 2개 고등학교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YRP는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언어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낚시 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언어 핫라인에 대해 홍보합니다.
- 낚시꾼 사건이 연례 경찰관 자격갱신 증오범죄 교육훈련의 범례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사가 실시된 이후, YRP 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Hate Crimes Community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YRP 의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증오범죄대책단은 유태인, 중국인, 이슬람교도,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아프리카계 캐나다인, 원주민 등, 증오행위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검사보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성및문화자원부(Diversity and Cultural Resources Bureau)를 재편성하여 증오범죄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성및문화자원부는 조직적 증오범죄(낚시꾼 사건 등)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OPP 와 공동으로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Fish Without Fear)’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낚시와 증오범죄에 초점을 맞춘 이 포스터를 여러 지역에 게시했습니다.
- 올해도 ‘낚시꾼 프로젝트(Project Fisher)’가 계속되었습니다. 올해는 신고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행사건이 없었습니다.
- 관내에서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 2008 년 11 월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낚시꾼에 대한 폭행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YRP 는 뉴마켓에 새로 설립된 인종관계위원회의 상임위원입니다.

온타리오 주경찰도 일선 경찰관의 증오범죄 수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채택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카와르타 파인 리지 교육청(Kawartha Pine Ridge District School Board)도 2008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각 학교에서 증오범죄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Peterborough Race Relations Committee)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연합을 구성하는 등,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은 지역사회 내의 증오행위 및 차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의 첫걸음을 나타냅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반인종주의 방안의 채택

위원회는 많은 기관이 일정이 매우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기적 방안이나 보다 조직적인 방안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부록 B에 각종 대책의 진전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추가적 권장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Fishing Without Fear)*’는 인종주의를 명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정 행위를 인종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의 중대성 때문에, 일간에는 인종주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인종주의 방안을 조직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몇 기관은 시행 계획의 일부로서 반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한 자원의 뒷받침이 있고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반인종주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를 부정하는 일반적인 경향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원 없이는 취지가 아무리 좋은 반인종주의 방안이라도 시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취지가 모호하거나,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자원의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소수민족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대표 또는 자문이 수반되지 않거나, 반인종주의와 반대되는 의미의 ‘다양성’의 목표에만 치중하는 방안은 차별 타파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⁵

위원회는 조사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기관의 대책이 인종주의 및 차별 타파의 전반적 목표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도록, 목표와 구체적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추천된 대책들이 일련의 중대한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각 관계기관이 공공의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인종주의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수립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책들은 모든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종류의 증오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주정부 차원의 종합적 기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이 2006 년에 주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⁶ 위원회는 증오범죄에 관한 실질적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다양한 추천안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Roy McMurry 경과 Alvin Curling 박사가 2008 년에 발표한 *청소년 폭력의 뿌리에 관한 보고서(Review of the Roots of Youth Violence Report)*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보고서로서, 개인적 및 조직적 인종주의에 대한 온타리오 주의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고 자부심을 침식시키는 인종주의의 특성 때문에, 저자들은 빈곤, 교육제도 상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요소와 더불어 인종주의를 청소년 폭력에 대한 다른 위험요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2007 년 11 월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을 둘러싸고 증오행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인종구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이 관련된 폭행 및 증오행위 사건 신고 건수가 올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증오행위 및 차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제도 상의 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레저 낚시 또는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몇몇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히 속제로 남아 있습니다.

증오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여전히 큰 틈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을 시행함으로써 이 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증오범죄의 성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를 문책하는 문제에 있어서 온타리오 주의 형법체계와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증오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증오범죄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 인식과 증오범죄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틈 때문에 증오범죄에 관해 지속적으로 공공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어디에 전화하여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괴롭힘 또는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언어장벽이 신고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 및 증오 사건에 관해 최대한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매우 많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관 및 단체가 소수민족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고, 증오행위 및 차별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홍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위원회는 누구든지 증오범죄 또는 증오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경찰서에는 이러한 사건을 규명하고 수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증오범죄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록 B에는 개인이 증오범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각종 자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온타리오 주 전역의 모든 도시는 차별 및 증오행위 체험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및 단체 지도자의 강력한 메시지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반인종주의 방안의 시행을 통해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부족은 모든 기관 및 단체가 증오행위 및 인종차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온타리오 주 전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줍니다.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은 지방자치체가 반인종주의 방안의 시행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기틀의 본보기입니다. 위원회는 다른 지방자치체들도 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반인종주의 타파 운동에 대한 일치단결된 노력으로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사회적 홍보운동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의 대책 시행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착수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의거한 향후 업무에서, 위원회는 관계기관, 지방자치체, 정부부처 등이 인종주의 또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긴장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가 2009년 봄 낚시철에 접어듬에 따라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기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인권을 지지하고 차별을 타파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원회는 아무쪼록 이 조사가 그동안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여, 모든 관계기관이 인종구분의 성격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인종구분을 타파 및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회는 이 모든 방안의 지속적인 진전이 누구나 두려움 없이 낚시할 수 있는 평화롭고 즐거운 낚시철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주석

¹ Cohen, Tobi. “아시아계 낚시꾼에 대한 폭행에서 인종이 작용했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토론토 광역시. 2008년 5월 13일.

²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추천안 5.1의 내용: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프로젝트에 입각한 단기 재정지원에서 지속적인 장기 재정지원으로 전환(OVSS, MCSCS).”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최종 보고서’. 온타리오 주. (p.93)

³ “반인종주의 기관은 인종주의가 없는 기관이 아니다. 그보다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에 대해 진취적 입장을 취하는 기관이다. 그 성격이 대립적이며, 조직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인종주의에 대응한다. 반인종주의 기관의 대응책은 인종주의가 존재하고, 개인적, 조직적 및 체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지배적 집단의 대중문화에 뿌리박혀 있다는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반인종주의 시각은 소수민족 사회의 인식이 사실이며 어느 한 가지 사건에 다중적 현실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출처: C. Tator 등(1998). ‘민주주의의 색깔: 캐나다 사회의 인종주의(The Colour of Democracy: Racism in Canadian Society)’ 제 2 판. 온타리오 주 스카버러: Nelson.

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2005).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 및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⁵ Tator 등(1998). “반인종주의 방안에 대한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반인종주의 시각 수립 거부, 소극적 시책, 부적절한 정책, 부적절한 교육훈련, 대표성 결여, 비효율적 관리 및 평가 시스템, 명목상의 시책, 불충분한 자원, 조직적 책임성 결여, 기만적 지배담론 등.” ‘민주주의의 색깔: 캐나다 사회의 인종주의’ 제 2 판. 온타리오 주 스카버러. “예를 들어 교육훈련 방안에 있어서, 위원회의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문화적 감수성’, ‘인종 인식’ 또는 ‘용인’을 강조하는 교육훈련 방안(또는 기타 방안)은 인종주의의 역학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종차별을 문화적 오해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2005, s.7.3.1.

⁶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2006). ‘온타리오 주의 증오범죄 대책: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최종 보고서’. 온타리오 주.

부록 A

2007 년에 경찰에 신고된 사건

2007 년 여름 및 가을에 온타리오 주 남부 및 중부 지역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관련된 일련의 중대한 사건이 관계당국에 신고되었습니다.

- 4 월 27 일, 조지나: 한 낚시꾼이 13 세의 아들과 함께 Malone Avenue 에서 낚시를 하던 중, 두 남자가 다가와 아들을 떠밀어 물에 빠뜨림. 72 세의 노인도 물에 빠뜨리고 낚시 도구를 훼손함.
- 7 월 22 일, 조지나: 일단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던 중, 다른 일단의 사람들이 다가와 낚시꾼 한 명을 물에 빠뜨림.
- 8 월 5 일, 조지나: 일단의 낚시꾼들이 Mossington Bridge 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 낚시꾼 한 명을 떠밀어 물에 빠뜨림.
- 8 월 6 일, 조지나: 일단의 낚시꾼들이 Mossington Bridge 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 낚시꾼 한 명을 떠밀어 물에 빠뜨림.
- 8 월 18 일, 조지나: 한 낚시꾼이 Mossington Bridge 에서 낚시를 하던 중, 두 사람이 다가와 낚시꾼을 뒤에서 떠밀어 물에 빠뜨림.
- 8 월 28 일, Gannon's Narrow's Bridge: 한 낚시꾼이 등뒤에서 떠밀려 물에 빠짐.
- 9 월 15 일, 웨스트포트: 세 명의 낚시꾼이 36 번 카운티 로드 상의 다리에서 다섯 명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음.
- 9 월 16 일, 조지나: 일단의 낚시꾼들이 Mossington Bridge 에서 낚시를 하던 중, 일단의 남자들이 다가와 낚시꾼 두 명을 떠밀어 물에 빠뜨림. 그에 이은 싸움에서 낚시꾼 한 명이 중상을 입음.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 9월 29일, 웨스트포트: 세 명의 낚시꾼이 네 남자에게 위협을 당함.
- 9월 30일, 코보콩크: 한 낚시꾼이 폭행을 당함.
- 10월 25일, 헤이스팅스: Trent Severn Waterway 다리 밑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인종비방 낙서가 발견됨.

이 중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부록 B
관계기관 명단

911 긴급전화: 경찰, 화재, 구급차

온타리오 주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

www.opp.ca

전화: 1-888-310-1122

범죄퇴치운동(Crime stoppers)

www.ontariocrimestoppers.com

1-800-222-8477

아프리카계 캐나다인 법률클리닉(African Canadian Legal Clinic)

www.aclc.net

전화: 416-214-4747 무료전화: 1-888-377-0033

반흑인 증오범죄 툴킷 제공

아랍계 캐나다인 연맹(Canadian Arab Federation)

www.caf.ca

전화: 416-493-8635 무료전화: 1-866-886-4675

중국계 캐나다인 전국협의회(Chinese Canadian National Council)

www.ccnc.ca

전화: 416-977-9871

남아시아인 서비스기관협의회(Council of Agencies Serving South Asians)

www.cassa.on.ca

전화: 416-932-1359

인권연맹-브나이 브리스 캐나다(League for Human Rights – B'nai Brith Canada)

www.bnaibrith.ca

반증오 핫라인: 416-633-3692 무료전화: 1-800-892-2624

토론토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법률상담소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2009년 4월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Metro Toronto Chinese and South East Asian Legal Clinic)
www.csealegalclinic.org
전화: 416-971-9674

온타리오 주 남아시아인 법률클리닉(South Asian Legal Clinic of Ontario)
www.salc.on.ca
전화: 416-487-6371

519 처치 스트리트 커뮤니티 센터(The 519 Church Street Community Centre)
www.the519.org
동성애혐오 폭행 피해자 및 목격자를 위한 인신공격 신고전화: 416-392-6877

폭행피해여성 헬프라인(Assaulted Women's Helpline)
www.awhl.org
전화: 416-863-0511 무료전화: 1-863-0511 TTY 무료전화: 1-866-863-7868
25 개 언어로 지원 제공

캐나다 반인종주의협의회(National Anti-Racism Council of Canada)
www.notohate.ca
전화: 416-979-3909

피해자 위기지원 및 서비스 연계센터
(Victim Crisis Assistance and Referral Services)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about/vw/vcars.asp
전화: 416-314-2447 무료전화: 1-888-579-2888

시민보호 프로젝트(Citizen Protection Project)
www.hamiltonsafehaven.org
전화: 905-546-2424

정착및통합 서비스기관(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 Organization)
www.hatecrimes.ca
전화: 905-667-7476 무료전화: 1-877-255-8136

오타와 경찰청 G.L.B.T. 연락위원회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후속 보고서

(Ottawa Police Service G.L.B.T. Liaison Committee)
www.glbt.ottawapolice.ca
전화: 613-230-6211

지역사회 여성의 집 – 런던(Women's Community House – London)
www.shelterlondon.org
24 시간 위기 핫라인
전화: 519-642-3000 무료전화: 1-800-265-1576

그레이스 시립병원(Hotel Dieu Grace Hospital)
지역사회 위기센터(Community Crisis Centre), 24 시간 위기 핫라인
www.hdgh.org
전화: 519-973-4435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체협회(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 - AMO)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 AMO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AMO 는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이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부분적으로 부응합니다. 낚시꾼 문제에 대한 설명회는 인종주의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체들의 대응의 범례를 각 지방자치체에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이민자 환영(Welcoming Immigrants)’ 문안은 주택 및 취업에서 이민자가 부딪히는 제도적 장벽의 철폐에 관한 것으로서 인종주의, 차별 및 증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민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AMO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이 문안은 인종주의, 차별 및 증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융합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 년 3 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수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책에 대한 이민위원회(Immigration Committee)의 연구조사 중,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에 관한 내용 채택. 2. 회의에서 낚시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인종주의 사건에 진취적으로 대응한 몇몇	1. 광범위한 문제들 중 인종주의, 문화적 감수성, 차별 및 증오에 관한 문제를 연구조사 주제로 추가. 2. ‘수용적 지역사회’에 관한 워크숍에서 낚시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차별 및 증오행위 사건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사례에 대해 논의.	1. ‘이민자 환영’ 문안에서 이(異)문화간 프로그램 및 인종관계 프로그램에 관해 언급하고 낚시꾼 사건을 인용. 각 관계기관에서 이민 문제에 관한 지방자치체의 역할과 이 문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2. AMO 연례회의에서 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Peterborough Race Relations Committee)가 낚시꾼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에 관한	1. 신규이민자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조사할 때 인종주의, 차별 및 증오에 관한 추가 연구조사 실시. 2. 각 지방자치체가 증오 또는 차별에 대응할 때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증진. (예: 조지나 시의 증오행위 대처 방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 년 4 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지역사회 소개.		설명회 개최.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2.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예.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경찰이 개입하여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문제를 조사했습니다. CMARD 가입 동의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반인종주의 및 인권 문제에 관한 지속적 대응을 뜻합니다.

4.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인종주의 및 차별을 규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강력한 메시지는 반인종주의 원칙에 부응합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지방자치체연합(Coalition of Municipal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 CMARD) 가입.</p> <p>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p>	<p>1. 시의회에 CMARD 가입 안건 상정.</p> <p>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해 언급하고 인종주의 및 차별을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서 게재.</p> <p>3. 카와르타 레이크스를 수용적인 지역사회로 홍보하고 차별은 중대한 문제로 다룬다는 내용의 성명서/사실을 낚시철이 시작될 때 아시아어 미디어를 통해 발표.</p> <p>4. 온타리오 주 경찰과 공조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지역사회 내 순찰활동 강화</p>	<p>1.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는 CMARD 가입 동의안을 통과시킴.</p> <p>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해 언급하고, “그 방식, 형태 또는 형식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성명서 게재. 낚시꾼 사건에 대응하여 시에서 취한 조치를 상술. http://www.city.kawarthalakes.on.ca/CityHall/News/asian_anglers.html</p> <p>3. 낚시철이 시작되기 전에 ‘카와르타 레이크스에서의 안전한 낚시’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 시청 관광부장(Tourism Development Officer)이 온타리오 주 관광국(Ontario Tourism)과 공조하여 아시아계 미디어 확인.</p>	<p>1. CMARD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위원회에 추가 지원 요청.</p>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요청.</p> <p>5. 지역사회 기관의 지역사업(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정보 수집.</p>	<p>4.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에서 낚시꾼이 주로 드나드는 지역에 온타리오 주 경찰(OPP)이 투입되어 순찰.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반의 눈에 잘 띄는 도보순찰 프로그램 활용.</p> <p>5. 지역사회 기관의 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사했으나 적절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찾지 못함.</p>	
--	---	--	--

3. 피터버러 시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피터버러 신규이민자 센터(New Canadian Centre of Peterborough)가 주축이 되어 각종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피터버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피터버러 시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시행 일정 및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이 프로젝트는 이민자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공교육을 검토합니다. 또한 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규명함으로써 인종주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피터버러 시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해당 없음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	-------	------------------	-----------------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1. CMARD 가입.</p> <p>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p>	<p>1. 이민부협력지역협의회(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Council)를 지원하는 시의회에 보고서 제출.</p>	<p>1. 이민자 지원 및 통합에 있어서의 각급 지역사회의 역할의 강화가 그 목적인 신규이민자 센터의 지역이민부협력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 통과. 계획의 핵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공교육 ○ 기업체에 해외에서 교육받은 근로자를 유치하도록 장려 ○ 이민자의 장기적 지역사회 통합 	<p>1.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태도에 입각한 반인종주의 정책의 지속적 지원.</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4. 웨스트포트 시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낙시꾼 사건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이루어진 합의는 없지만, 웨스트포트 시는 인종 및 기타 *인권법(Human Rights Code)*에 의해 보호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규탄하는 ‘지역사회 공익 성명서(Statement of Community Interest)’를 시청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낙시꾼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했습니다.

2. 웨스트포트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인권위원회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 투입된 추가 자원은 없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낙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시청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재하는 것은 긍정적인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웨스트포트 시에 다시 낙시하러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웨스트포트 시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긍정적인 메시지에 이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낙시꾼의 안전을 보호하고 반인종주의를 촉진하며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CMARD 가입. 2. 시청 웹사이트에 낙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립된 대책 없음	1. 인종, 종교 및 연령을 바탕으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탄하는 ‘지역사회 공익 성명서’를 시청 웹사이트에 게재.	1. 아시아계 캐나다인 낙시꾼 단체, 지역주민 및 경찰과 공조하여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웨스트포트에서 낙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5. 조지나 시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평등및다양성 위원회(Equity and Diversity Committee) 설립을 위한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제안된 각종 프로젝트가 현재 기획 중입니다.

2. 조지나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예.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2008년 낚시철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조지나 시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관건입니다. 평등및다양성 위원회 설립 및 CMARD 가입은 인종주의 타파의 장기적 목표에 기여합니다.

4. 조지나 시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평등및다양성 위원회와 관계된, 평등을 외치는 집단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자들이 각종 방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각종 프로젝트는 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CMARD 가입. 2. 시청 웹사이트에 낚시꾼 사건에 관한 성명서 게재. 인종주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3. 인종관계 위원회 설립.	1. 조지나 시 평등및다양성 위원회(Georgina Equity and Diversity Committee) 설립.	1. 2008년 5월 29일, 조지나 시는 CMARD 가입 동의안을 통과시킴. 조지나 시 평등및다양성위원회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3월 21일을 세계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타파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제안 ○ 차별 사건에 대한 조지나 시의 대응에 관한 백서 개발 ○ 조지나 시를 '다양한 지역사회'로 선포하도록 제안 – 공식화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수용적 문화의 개발 및 촉진을 위한 	1. 차별 사건에 대한 대응에 관한 백서가 개발되면 인권위원회, 다른 지역사회, CMARD 및 AMO와 공유하도록 권유. 2. CMARD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위원회에 추가 지원 요청.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조지나 시의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지역사회 방안 시행	
--	--	---------------------------------------	--

6. 요크 지역 경찰서(York Regional Police Service - YRP)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대부분의 방안이 시행되었고, 그 나머지는 현재 수립 중입니다.

2. YRP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예.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일반의 신체적 안전 증진, 낚시꾼 사건에 관한 공공교육, 중오범죄에 대한 YRP 의 대처능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YRP 가 이 문제에 관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YRP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YRP 는 중오범죄에 대한 공공교육(경찰서 내부 및 학교)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오범죄의 영향과 그에 대한 조치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은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인권위원회와 YRP 의 협의 내용: 1. 중오범죄(특히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에 대한 공공교육 강화.	1.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사건 사례를 중오범죄 관련 청소년 공공교육 교과과정에 추가. 2. YRP 가 이 문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1.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학교안전 담당 경찰관들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 및 2개 고등학교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에 대해 설명. 2. YRP는 이 주제에 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임.	1. 중오행위를 다중언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일반에 홍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 신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2.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경찰 서비스 이용 번호의 확대.</p>	<p>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 학교에 통지.</p> <p>3. 문제에 관한 학부모협의회와의 협의 요청.</p> <p>4. 인종관계위원회의 설립 및 지속적 지원에 관해 조지나 시 지원.</p> <p>5. 다중언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증오행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미디어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홍보.</p> <p>6. 낚시꾼 사건 사례를 증오범죄에 관한 연례 경찰관 자격갱신 시험에 반영.</p>	<p>3. 여러 언어로 된 보도자료 배포.</p> <p>4. 낚시 협회에서의 설명회에서 비상시 전화할 수 있는 다중언어 핫라인 소개.</p> <p>5. 낚시꾼 사건을 연례 경찰관 자격갱신 증오범죄 교육훈련의 범례로 채택.</p> <p>낚시꾼 사건 조사가 실시된 이후 시행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Hate Crimes Community Working Group - HCCWG)을 설립하여 YRP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대책단 구성 – 유태인, 중국인, 이슬람교도,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흑인, 원주민 등, 증오행위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검사보 1명. OPP와 공동으로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Fish Without Fear)’ 포스터 제작. 낚시와 증오범죄에 초점을 맞춘 이 포스터를 여러 지역에 게시. 올해도 ‘낚시꾼 프로젝트(Project Fisher)’가 계속됨. 올해는 신고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행사건이 없음. 낚시꾼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 OPP 증오범죄수사대(Hate Crimes Unit)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관내 증오범죄 감시활동 및 연락체계 강화. 관내에서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체계를 수립. 11월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워크숍 개최 – 낚시꾼에 대한 폭행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연구 YRP는 뉴마켓에 새로 설립된 인종관계위원회의 상임위원임. 	<p>2, 다른 지역 경찰서 및 CMARD 에 낚시 팸플릿 제공.</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및문화자원부(Diversity and Cultural Resources Bureau)를 재편성하여 증오범죄 전담 수사관을 배치함 - 이에 따라 다양성및문화자원부는 조직적 증오범죄(납시꾼 사건 등)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수사할 수 있게 됨. • 납시꾼 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 YRP는 OPP 및 RCMP와 더불어 이(異)문화간 친선위원회(Intercultural Friendship Committee) 위원임. 동 위원회는 온타리오 주 전역의 각 지역사회에 스스로를 '다양한 지역사회'로 선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노력 중임. <p>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관한 학부모협의회와의 토의 - 증오범죄 경찰자문단(Hate Crimes Police Advisory Group)의 자문위원이 동참할 수도 있음. • 납시 및 폭행사건에 관한 팸플릿이 현재 제작 중이며 2009년 봄 납시철에 맞추어 배포될 예정임.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7. 온타리오 주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 - OPP)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수립 중입니다.

2. OPP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예. OPP 는 교육훈련 자료를 수정하고 이 정보를 경찰관 및 각 지역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증오범죄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찰관의 인식이 높을수록 공공안전이 증진됩니다. 카와르타 레이크스 시 등의 사건 발생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OPP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OPP 는 증오범죄에 관한 공공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증오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를 문책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p>인권위원회와 OPP 의 협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오범죄(특히 아시아계 캐나다인 대상)에 대한 공공교육 강화 2.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경찰 서비스 이용 문호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학교 범죄수사 과목 교육에 증오범죄 전문가를 투입하여 경찰관에 대한 증오범죄 교육 강화. 증오범죄 수사대는 온타리오 경찰대학(Ontario Police College - OPC)과 이 분야의 교과과정 강화에 대해 협의. 2. 증오범죄 및 증오행위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OPP 증오범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증오범죄/극단주의 수사대 (Hate Crimes/ Extremism Unit - HCEU)가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일반수사 지침’, ‘범죄저지 지침’, ‘인터넷 악용 지침’ 등 OPP 지침에 대한 설명회 실시 중 – 설명회에서 낚시꾼 사건을 사례로 인용. <p>OPP는 또한 이 문제에 관한 OPC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신입 경찰관을 위한 증오범죄 교육훈련 비디오를 제작 중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증오범죄 연락관 제도(Hate Crime Liaison Office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해 낚시철에 지속적으로 사건 발생 지역의 단속활동 강화. 2. 증오행위를 다중언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일반에 홍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 신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3. 다른 경찰기관 및 CMARD 에 낚시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수사대는 낚시꾼 사건에 대한 토론을 공공교육 교과과정에 추가. 사건 발생 지역의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에 대해 홍보.</p> <p>3. 중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관한 지역사회/경찰 협력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팸플릿 제작. 이 팸플릿은 다중언어로 제작되며 2008년 낚시철에 발간될 예정임.</p> <p>4. 경찰에 신고된 중오행위 사건이 범죄 성립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인종 비방 등), 중오범죄 연락관(Hate Crimes Liaison Officer)을 통해 사건을 추적 및 감시하고 피해자를 적절한 서비스기관에 의뢰.</p> <p>5. 이 문제 및 중오범죄 전반에 관해 지역사회 협력기관(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p>	<p>Program)가 제4분기에 접어든 현재, 온타리오 주 전역의 OPP Administrative Detachment를 대표하는 약 72명의 일선 경찰관이 중오범죄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있음.</p> <p>이 제도는 도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시험 단계이지만, OPP는 이를 바탕으로 중오범죄에 대한 통지를 더 많이 받고 있음.</p> <p>3. HCEU는 피터버러에서 세 차례 설명회를 열고 1,500명의 고등학생에게 중오범죄에 대해 교육.</p> <p>4. 범죄퇴치운동(Crime Stoppers) 포스터 ‘두려움 없이 낚시하기’ 개발.</p> <p>5. 요크 지역 경찰서와 공조하여 ‘안전한 연안낚시 및 정보의 날(Safe Shores Fishing and Information Day)’ 지정 – 2008년 6월 8일.</p> <p>6. OPP HCEU는 2009년 1월 OPP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중오범죄 일선 교육훈련 비디오 배포 예정.</p> <p>7. HCEU는 지역사회 단체, 사법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음.</p> <p>8. 통합 범죄 신고 통계를 통해 중오행위 사건 및 중오범죄 추적 – 성취향, 인종 등의 세부 범주가 있음.</p> <p>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안:</p> <p>낚시와 폭행에 관한 팸플릿이 2009년 봄 낚시철에 맞추어 배포될 예정임(YRP와 공조).</p>	<p>팸플릿 제공.</p> <p>4. 일선 중오범죄 교육훈련 비디오를 다른 경찰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8. 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MNR)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대부분 현재 수립 중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수뇌부와 공동 홍보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a. MNR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2b.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2a. 예.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상당수의 직원을 훈련시켰습니다. 2b. 천연자원부는 2009 년 말까지 모든 방안이 시행되거나 천연자원부 실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천연자원부의 개입 및 경찰과의 공조가 공공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종구분 훈련은 여러 서비스 공급자에게 파급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반인종주의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낚시꾼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MNR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낚시 법규 요약(Fishing Regulation Summary)에 실려 있는 반인종주의 및 차별에 관한 메시지는 홍보 계획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홍보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도록 더 많이 다듬어야 합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 년 3 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인종구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인종에 근거한 항의를 하는 개인에게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 실시.</p> <p>2. 인종 및 기타 <u>인권법에 위반되는</u> 근거를 바탕으로 낚시꾼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심의 중.</p> <p>3. 경찰과 공조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MNR 관련</p>	<p>1. 공원보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종에 근거한 항의에 대응할 때 인종구분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실시. 낚시꾼 사건을 교육 범례로 채택. 인권위원회는 MNR 에 인종구분에 대한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없지만, MNR 은 인권위원회와 공조하여 인종구분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p>	<p>1. MNR 은 OHRC 와 공조하여 공원보호국 경찰관을 위한 인종구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종에 근거한 항의에 대응해왔음. 이는 2009 년 2 월을 기점으로 공원보호국 경찰관 연례 자격갱신 절차의 일부로 채택되며, 모든 경찰관은 2009 년 12 월까지 교육을 받게 됨. 낚시꾼 사건을 교육 범례로 채택할 예정임. 신입 공원보호국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함. 일부</p>	<p>1. 인종구분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OHRC 와 지속적으로 협력.</p> <p>2. 사건 발생 지역에서의 MNR 활동을 강화하고, 신변 위협을 느끼거나 괴롭힘을 당하는(인종 또는 기타 근거를 바탕으로) 낚시꾼 및 사냥꾼에 관해 공원보호국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과의 공동활동을 수행하도록 촉구.</p>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 년 4 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법규를 집행하고, 폭행 사건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고, 폭행이 발생할 경우의 신고처에 대한 정보 제공.</p> <p>4. 낚시철 시작을 맞아 낚시꾼을 환영하고, 차별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밀렵/불법 낚시는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메시지를 MNR 웹사이트에 게재.</p> <p>5. 낚시꾼 단체 및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 낚시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불식하기 위한 공공교육 방안 수립.</p>	<p>2. 경찰과 공조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MNR 관련 법규를 집행(특히 다음 낚시철이 시작될 때).</p> <p>3. 이민부 및 기타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2008 년도 낚시철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 2008 년도 낚시 법규가 실린 책자에 아래 메시지를 게재함(중국어판에만): “우리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활동에 참여할 때 동료 낚시꾼도 존중해야 하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해야 합니다.”</p> <p>4. 낚시꾼 단체 및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 낚시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불식하기 위한 공공교육 방안 수립.</p>	<p>시행됨.</p> <p>2. MNR 은 사건 발생 지역에서 경찰과 공조하여 수상 순찰 및 기타 순찰활동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공원보호국 경찰관은 폭행사건이 발생하거나 목격할 경우 911 에 신고하도록 일반에 대한 홍보를 계속할 것임. 시행됨.</p> <p>3. 오로라 공원보호국은 중국어(표준어 및 광둥어)를 구사하는 공원보호국 경찰관을 채용함.</p> <p>4. 낚시 법규에 관한 홍보 프로그램이 개발됨. MNR 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시책에 참여하여, OHRC 와의 협력 하에 차별 문제에 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할 것임.</p> <p>MNR 은 2009 년도 낚시 법규 요약(Fishing Regulation Summary)에 다음 문구를 삽입할 예정임: “온타리오 주에서는 인종차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낚시꾼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괴롭힘이나 폭행을 목격할 경우, OPP 또는 관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에 관한 상세 정보는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ohrc.on.ca”</p>	<p>3. MNR 에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OPS)의 다양성 정책을 준수하도록 촉구. OHRC 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집단을 포용하기 위해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임. OHRC 는 소수민족 집단의 일원(다중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 포함)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승진시키기 위한 MNR 의 노력을 지원함.</p> <p>4. OHRC 는 홍보 계획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메시지 전달은 홍보 계획의 바람직한 첫걸음임. 어느 한 집단만이 밀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MNR 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일반에 알리는 것이 중요함.</p> <p>5&6. MNR 은 낚시꾼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기관과 공조할 것인가? 불법적 낚시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와 반인종주의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5. MNR 은 2008 년 6 월 8 일 요크 지역 경찰서의 주관 하에 조지나 시에서 열린 공공인식 행사와 웨스트포트에서 열린 온타리오 주 중국인납시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함.</p> <p>6. Ongoing.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홍보 및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공원보호국 경찰관이 지역사회 행사 및 기타 특별행사에 참석하는 등). 진행 중임.</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9. 이민부(MINISTRY OF CITIZENSHIP & IMMIGRATION - MCI)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두 가지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수립 중이거나 이민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반영했습니다.

2. MCI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현재로서는 언제 몇 가지 방안이 시행될지, 또는 어떤 자원이 사용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인종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이민부 정책과 관련하여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과 교육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및 정착 서비스 기관과 공조하여 각 기관의 기존의 자원 내에서 차별 및 인종범죄 피해자를 확인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3. MCI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초점에 반인종주의 원칙 및 목표(및 언어)를 추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특별히 낚시꾼의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의 통합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예: 고용주를 위한 도구 검토, 인종주의 및 차별을 억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각 기관 및 단체의 인권 및 반인종주의 정책 수립, 반인종주의와 증오범죄 타파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의 기관간 공유 등)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이민부 장관 및 이민부가 다음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부처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규명:</p> <p>a. 낚시꾼 사건 조사에 관한 정부의 대책과 그 결과를 촉진 및 보고한다.</p> <p>b. 정부 시책에서 인종적 다양성과 평등이 존중되고 증진되도록 규제 및 정책 개발 활동에</p>	<p>1.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OPS) 내에서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부부처 차원의 대책 수립:</p> <p>a. 낚시꾼 사건 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p> <p>b.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종적 다양성과</p>	<p>1b. 진행 중임. MCI의 온타리오 주 지역사회 건설자(Ontario's Community Builders - OCB) 프로그램은 '인종주의 및 차별 타파'를 목표로 한 각종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제공함. MCI의 신규이민자 정착 프로그램(Newcomer Settlement Program) 하에 재정지원을 받는 몇몇 부문개발 프로젝트는 다양성에 대한 대화의 증진에</p>	<p>1b. MCI는 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각종 방안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보조금과 그 성과(인종주의 타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사이의 명백한 연결관계를 OHRC 및 일반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p>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원한다.</p> <p>c. 인종구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과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거나, 인종구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과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정부 시책을 지원한다.</p> <p>d.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과 교육활동을 촉진하거나,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과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정부 시책을 지원한다.</p> <p>2. 낚시꾼 사건과 신고된 폭행사건을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의 일종으로 인정 및 비난하는 홍보 계획을 낚시철(2008년 봄)이 시작될 시기에 맞추어 개발.</p>	<p>평등이 존중되도록, 이민부 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p>c. 이와 같은 대책의 특별한 취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인종구분에 대한 OHRC와의 협의 개시 제의</p> <p>d. 이민부 업무 범위 내에서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 및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p>2. MNR 및 다른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행사건에 관한 홍보 계획 수립.</p>	<p>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하는 것과 반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춘 것임.</p> <p>MCI는 '캐나다 경력'에 관한 문제를 연구 중이며, 고용주를 겨냥한 각종 도구 및 방안을 개발 중임.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함.</p> <p>1c. 이 문제에 관한 진전상황은 불분명함.</p> <p>1d. 진행 중임. MCI는 신규이민자를 환영한 기관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계속할 것임.</p> <p>2. 이 문제에 관해서는 MNR이 주도하고 있음. 이 방안에 관해 이민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p>	<p>OHRC는 낚시꾼 사건 조사에서 비롯된 향후 방안(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종자에 대한 장벽의 철폐와 관련하여 기업체와 공조하여 실시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자 함.</p>
<p>3. 향후 이민부의 이민 관련 시책 또는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과의 공조사업에 통합 및 고용에 대한 차별적 장벽과 인종주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p> <p>4. 법무부, 각 지역 이민 및 정착 관련 기관 등과 공조하여 차별/증오범죄 타파를 위한 방안 수립.</p>	<p>3.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재정지원 기준 및 재정지원 시책의 시행에 있어서 다양성과 반인종주의를 촉진하는 문안을 입안하는 한편 캐나다 이민국과 공조하여 각종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p> <p>4. 정부부처간 증오범죄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Hate Crimes)에 합류. 이민 및 정착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기존의 자원 내에서</p>	<p>3. 온타리오 주 지역사회 건설자 프로그램 2008-2009년도 지침에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온타리오 주 <i>인권법</i>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관 평가기준에 “다양성, 수용, 참여 및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등을 중시하는 정책 및 절차의 존재와 사용”이 포함되어 있음.</p> <p>신규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2009-2010년도</p>	<p>3. 내년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정책 목록에 ‘인권정책’ 포함. OHRC의 <i>인권정책 개발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Developing Human Rights Policies)</i>을 자원으로 활용. • 프로그램 목표에 반인종주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차별 및 중오범죄 희생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p>	<p>지침에 이와 유사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포함될 예정임. 시행됨.</p> <p>4a. 이민국 차관보가 동 위원회 위원임. 시행됨.</p> <p>4b. MCI의 재정지원을 받은 반인종주의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MCI는 반인종주의에 관한 모범적 방안을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성과를 심사함.</p>	<p>4b. 반인종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의 성과가 입증되면, 이 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는 계획을 수립.</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0.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 MAG)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을 통해 대부분의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홍보운동 문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2.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예. 증오범죄대책단에 대한 응답을 통해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관이 증오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 핵심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 추천안 5.1).

3. 법무부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시행될 경우 이 방안들은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증오범죄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은 증오범죄를 타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추천안의 시행을 법무부의 우선과제로 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주도적 역할 규명. 2. 증오범죄 희생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재정지원. 다른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희생자 지원을 위한 방안 수립. 3. 모든 공공기관에서 '증오범죄' 및 '증오행위'의 표준 정의를 채택하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1.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HCCWG) 보고서 상의 추천안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취하고 있음을 표명. 2. 법무부 관리들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이민부 및 천연자원부 관리들과 협의 중임. 3. 지역사회 기반 보조금 지급 제도의 적정	1. 18개월간의 증오범죄 심사및시행 프로젝트(Hate Crimes Review and Implementation Project)가 완료되었지만, 정부부처간 반증오범죄 위원회는 이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2. 법무부 관리들이 낚시꾼 사건에 대한 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대응을 강구함. 2007년 6월의 연방정부-주정부-준주정부(FPT)	1. 증오범죄 문제를 다루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 고려. 2. OHRC는 증오범죄 피해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행될 지역에서의 OVSS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자 함. 3. 주정부가 관련되고 온타리오 주 전역으로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증오에 의해 유발된 범죄를 <i>형법(Criminal Code)</i>에 추가하도록 촉구.</p> <p>4. 전지역 검찰을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교육 실시. 낚시꾼 사건을 교육의 범례로 활용.</p> <p>5.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상의 추천안의 시행에 관한 진전상황 홍보.</p>	<p>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증오범죄 대책의 결과 및 성공사례를 평가 중임.</p> <p>4. 더 많은 검사에게 증오범죄 문제에 관한 교육 실시.</p>	<p>법무차관 회의에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역사회 증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에 대응하여 문건을 제출하는 한편, <i>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of Canada)</i>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차관들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임.</p> <p>3. MAG는 23 개 지역사회 증오범죄 대응 보조금(Community Hate Crimes Response Grants) 수령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2008년 11월 사법 전문가, 피해자, 지역사회 대표, 서비스 공급자, 언론, 청소년 등이 모여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지역사회 연합토론회(Community Alliance Forum)에 보조금이 지급됨.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증오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웹사이트 www.notohate.ca의 창설에 보조금이 지급됨.</p> <p>온타리오 주 피해자서비스 사무국(Ontario Victim Services Secretariat - OVSS)은 증오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고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연례화된 재정지원이 증액되었음.</p>	<p>확대될 프로젝트(지역사회 피해자 영향 보고서, 정보센터 등)에 대해 일반에 공지.</p> <p>4. 인종관계위원회 및 기타 증오범죄 관련 자문위원회에 MAG 에서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인.</p> <p>5. 증오행위 및 증오에 의한 범죄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i>형법</i> 상의 정의의 수정을 지속적으로 옹호.</p> <p>6.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대책단의 추천안의 진전상황에 관해 OHRC 와 지속적으로 논의.</p> <p>7. 증오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서비스의 존재와 법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알도록 홍보.</p> <p>8. 증오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범죄의 기소처분에 관한 통계를 법원에서 수집.</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OVSS는 중오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p> <p>4. 형법부(Criminal Law Division)는 형사부(Crown Law Office-Criminal) 및 산하 6개 지역에서 중오범죄 전문가를 훈련시킴. 형법부는 형사부 및 온타리오 주 전역의 약 70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오범죄 기소 관련 교육을 계획 중임. 진행 중임.</p>	
<p>6. 적절할 경우 법무부 대표가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배석하여 경찰 신고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를 파악하도록 함.</p> <p>7. OHRC(및 MCSCS)와 공조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중오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 기획(HCCWG 보고서 추천안 7.1).*</p> <p>8. OHRC(및 MCSCS)와 공조하여 피해자 권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중오범죄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원 개발(HCCWG 보고서 추천안 7.3)</p> <p>9. OHRC(및 MCSCS)와 공조하여, 중오행위에 대해 일반을 교육하고 일깨우기 위해 미디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보도</p>	<p>5. 적절할 경우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법무부 대표가 참석.</p> <p>6. HCCWG 보고서 6.7 항의 추천안 검토.</p> <p>7. 필요할 경우 OHRC 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홍보운동을 수립하여 피해자 권리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정보/자원 개발.</p>	<p>5. MAG 는 OVSS 를 통해 요크 지역 경찰서 중오범죄 자문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함. 진행 중임.</p> <p>6. MAG는 피해자 권리헌장(Victims' Bill of Rights)에 중오범죄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임.</p> <p>7. MAG 와 OHRC 는 일상생활에서의 중오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과 그에 수반되는 자원에 관해 공조하기 위한 기초 협의를 끝냈음. 진행 중임.</p> <p>다음에 관한 방안이 수립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서비스 관계자를 위한 중오범죄 교육 계획. OVSS는 2010년 12월까지 300여 명의 직원을 교육하는 한편, 2009년에서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납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 년 4 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내용 심사 (HCCWG 보고서 추천안 7.4) 10. 중오범죄 선고를 받은 자가 <i>피해자 권리헌장 (Victims' Bill of Rights)</i> 3 조에 의거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O.Reg.456/96 을 개정하고, 모든 중오범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가정하는 내용을 <i>피해자 권리헌장</i>에 추가하는 법안을 입안 (HCCWG 보고서 추천안 6.7).</p>		<p>2011년까지 2년간 산하 159개 지역사회 보조금 지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럼 지역 담당 검사, 경찰, 학자,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공조하여 지역사회 피해자 영향 보고서 개발.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1. 지역사회안전및교도행정부(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 MCSCS)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2009년 1월 현재, 경찰-이해관계자 대책단(Police Stakeholder Working Group)이 두 차례 소집되어 지역사회 중오범죄대책단 추천안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2. MCSCS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자원과 일정을 정하기 위해 계속 작업 중입니다.

3. MCSCS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지역사회 중오범죄대책단 추천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이 방안들은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중오범죄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 중오범죄대책단 추천안은 경찰활동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6.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표준규범(Policing Standards Manual)에서 추천된 중오/편견 범죄 및 중오선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12개월 내에 이 정책을 수정한다. <p>2.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 경찰서에 중오범죄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중오범죄 관련 경력이 있는 	<p>1. MCSCS 는 경찰활동에 영향이 미치는 HCCWG 보고서 상의 추천안을 더 깊이 검토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해관계자 대책단(Police Stakeholder Working Group)을 설립 중임. 이 대책단은 다음달에 소집될 것으로 예상됨.</p> <p>2. 대책단은 경찰표준자문위원회(Policing Standards Advisory Committee)를 통해 중오/편견 범죄 및 중오선전 관련 MCSCS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심사.</p>	<p>1. 경찰-이해관계자 중오범죄대책단(Police Stakeholder Working Hate Crimes Working Group - PSHCWG)이 설립됨. 2009년 1월 현재, PSHCWG 는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회 중오범죄대책단의 추천안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초안을 작성함.</p> <p>PSHCWG 는 현재 중오범죄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수립하여 캐나다 <i>형법</i>을 수정하는 가능성을 검토 중임. PSHCWG 는 또한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교육훈련 요건, 변경 또는 개선의 기회 등을 파악하기 위한</p>	<p>1. OHRC 는 경찰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 경찰활동 백서의 재검토 및 개정, 중오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신뢰성 있는 방법 개발, 지역사회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낚시꾼 보고서에 언급된 방안들에 대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자 함.</p>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자원 역할을 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 경찰서는 중요행위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수사에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일반에 공개한다. • 각 지역 경찰서는 관할구역 내 모든 주민이 범죄, 중요범죄 또는 중요행위를 자신이 가장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p>환경조사의 문안을 작성함.</p>	
<p>5.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요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경찰서장협의회(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사법통계원(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등과 공조하여 중요범죄 및 중요행위 사건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매년 관계부처 및 일반에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p>6.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요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RC(및 MAG)와 공조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중요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을 계획한다. <p>7. 다음 내용이 포함된 중요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7.3:</p>	<p>3. 대책단은 추천안 6.27 검토. MCSCS 는 중요범죄 수사대가 없는 경찰서에 OPP 중요범죄 연락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림.</p>	<p>3. 대책단에 의해 제시된 이 추천안은 현재 논의 중임.</p>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RC(및 MAG)와 공조하여 피해자 권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증오범죄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원을 개발한다. <p>8. 다음 내용이 포함된 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RC(및 MAG)와 공조하여, 증오행위에 대해 일반을 교육하고 일깨우기 위해 언론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를 검토한다. 			
---	--	--	--

12.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EDU)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현재 수립 중입니다.

2.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예. 그러나 소수민족 집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낚시꾼 사건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발에 모든 교육청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교육부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교육부는 개정된 교과과정 문서에 반차별 교육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개정된 문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반인종주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증오행위, 인종주의 및 차별에 관한 교과과정을 통합함으로써 반차별 및 인종주의 타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	-------	------------------	-----------------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1. <i>인권법</i> 보호 대상 지역사회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연하고 조직적인 차별 문제를 다루는 한편, 학생들에게 증오 및 증오 관련 괴롭힘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자원 및 기술을 제공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증강(증오범죄대책단 보고서 추천안 4.2).</p> <p>2. 아시아계 캐나다인 및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체험과 관련된 증오 관련 사건 및 차별에 관한 내용을 사건 발생 지역 교육청의 교과과정에 추가.</p>	<p>1. 사건 발생 지역 교육청과 공조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p> <p>2.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서 차별 및 증오 관련 사건에 대한 토의의 범주 내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 및 낚시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례 및 대응책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p> <p>3.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서 지역사회 단체의 참여 검토.</p>	<p>1 & 2. 교육부는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사건 범례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1, 5, 8, 10, 12 학년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개발을 위해 2008년 5월 및 6월에 각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시작함. 2009년 가을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 토론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진행 중임.</p> <p>3. 2008년 7월 교과서 집필 팀이 투입되어 평등(Equity Studies), 성별(Gender Studies), 세계문화(World Cultures) 등 초안 과목의 개발작업을 시작함. 평등 및 반차별 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자들과 더불어 온타리오 주 반인종주의 다문화교육 네트워크(Antiracist Multicultural Education Network of Ontario)가 교과서 집필 팀에 참여함. ‘평등’ 과목에 대한 검토 및 협의는 늦가을에 시작되었으며, 교과과정 검토 과정의 일부로서 2009년 2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임. ‘성별’ 과목 교육은 2009년 2월 현재 3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이 수집될 것임. ‘세계문화’ 과목은 2009년 여름에 계속 개발될 예정임. 진행 중임.</p>	<p>1. OHRC는 평등에 관한 두 개의 초안 과목과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사례연구 초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함.</p> <p>2. 낚시꾼 사건 및 증오범죄에 관한 교과과정 개발 과정에 교육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p> <p>3. 소수민족 집단이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p>
--	---	--	---

13. 남부지역 카톨릭 교육청(Conseil Scolaire de District Catholique Centre – Sud)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일부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문제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뉴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뉴시꾼 사건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사들에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교육 실시.	1.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문제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사들에게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 교육 실시.	1. 피터버러에 OPP가 초청되어 약 20명의 학생에게 증오범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2. OHRC가 7-8학년생 25명에게 반인종주의 교육을 실시함. 교육부 관계자 13명이 참석함. 2008년 8월, 교육청이 제공한 자원을 이용하여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위협 및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워크숍을 실시함.	1. 필요에 따라 증오범죄 및 뉴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2. 필요에 따라 반인종주의 및 반차별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교육.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4. 요크 지역 교육청(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 YRDSB)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문제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낚시꾼 사건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나? 협력이 이루어졌나?)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문제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한편 관계직원과 함께 감수성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간 및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낚시꾼 사건/중오행위와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발 및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중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 2. 학교에 요크 지역 경찰서(YR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중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1. 교육청/교육부와 공조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중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 2. 가능할 경우 학교에 YRP 초청.	2. YRDSB는 요크 지역 경찰서에 요청하여 낚시꾼 폭행사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동 교육청의 '성격이 중요합니다(Character Matters)' 운동에 문제를 반영함. 동 교육청은 '문화적 능숙성'이라는 주제 하에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예: o사건 발생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의 경우,	1. 시행되지 않은 방안: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 2. 필요에 따라 중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교직원과 협의하여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감수성 및 수용성 훈련을 실시함.</p> <p>○ 관내 1개 초등학교에서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과 함께 문제에 관한 새로운 기사에 대해 토론함.</p> <p>시행되지 않은 방안: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p>	
--	--	--	--

15. 요크 지역 카톨릭 교육청(York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일부 학생이 문제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과과정 개발 참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학생들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과과정 개발 및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p> <p>2. 학교에 요크 지역 경찰서(YRP)를 초청하여</p>	<p>1. 교육청/교육부와 공조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p>	<p>• 케이스워의 레이디 오브 더 레이크 카톨릭 칼리지 스쿨(Lady of the Lake Catholic College</p>	<p>1.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p>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p>	<p>교재 및 자료 개발.</p> <p>2.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YRP 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p>	<p>School)은 수 차례에 걸쳐 학교집회에서 문제에 관해 토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및 교육감이 YRDSB 소속 학교장 및 교육감과 함께 조지나 시장이 소집한 두뇌집단에 참여함. • 조지나 지역은 문제의 핵심 지역이며, 위 학교는 지역사회/경찰 및 타지역 교육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함. • 인종주의에 의한 괴롭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요크 지역 경찰서 거리순찰 경찰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함. 	<p>2. 필요에 따라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p>
------------------------------------	--	---	--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6. 카와르타 파인 리지 교육청(Kawartha Pine Ridge District School Board)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을 교육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학생들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과과정 개발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간 및 자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 2. 학교에 요크 지역 경찰서(YR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1. 교육청/교육부와 공조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 개발. 2.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OPP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1. 동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육 범례가 개발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임. 2. 2008년 6월, 동 교육청 소속의 모든 고등학교가 경찰로부터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관한 교육을 받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편지가 학부모에게 발송됨.	1. 필요에 따라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7. 피터버러 빅토리아/노섬벌랜드/클래링턴 카톨릭 교육청(Peterborough Victoria Northumberland and Clarington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일부 학생이 문제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학생들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 2.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1.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가 개발되는 즉시 사용. 2.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OPP와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1. 교육부로부터 증오범죄 관련 교재 및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음. 2. OPP가 피터버러 카운티 관내 일부 학교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1. 필요에 따라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8. 어퍼 캐나다 교육청(Upper Canada District School Board)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예.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 및 일정이 수립되었습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 2.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1. 교육청/교육부와 공조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고 이 문제를 학교 이사회에 상정.	1. 이 문제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예비 협의. 시행되지 않은 방안: ○ 2009년 초 이 문제를 학생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 OPP를 각 학교에 초청하여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임.	1. 필요에 따라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2.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19. 이스턴 온타리오 카톨릭 교육청(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of Eastern Ontario)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동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2008-2009 학년도에 모든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 동 교육청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인종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는 차별 및 인종주의의 성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1. 지역사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참여. 2. 학교에 OPP를 초청하여 고정관념,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에 대해 홍보.	1. 교육청/교육부와 공조하여 낚시꾼 사건을 범례로 사용한 인종주의 및 증오행위 관련 사례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차기 교장 및 교감 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킴. 2.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경찰과 협력하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제공.	1. 교육부로부터 증오범죄에 관한 교재 및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음. 2. 2008-2009 학년도에 이를 수행할 예정임.	1. 필요에 따라 증오범죄 및 낚시꾼 사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 2.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20. 온타리오 주 낚시사냥연합회(Ontario Federation of Anglers and Hunters - OFAH)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예.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 OFAH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재하기 위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 OFAH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괴롭힘을 규탄하는 한편 *어류및야생동물법(Fish and Wildlife Act)* 상의 괴롭힘 관련 조항의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OFAH 는 어느 한 집단만이 불법적 낚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낚시 법규의 집행은 *인권법*과 관련된 근거 및 기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별개의 문제임을 일반에 알림으로써 인권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공공안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인종 괴롭힘에 대한 규탄은 괴롭힘을 저지하고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첫걸음입니다. OFAH 는 낚시꾼들과 협력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적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 년 3 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합법적 및 불법적 낚시에 대한 오해를 규명.</p> <p>2. 낚시철이 시작될 시기에 맞추어, 인종주의를 비난하고 차별 또는 폭행을 당한 낚시꾼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공지를 웹사이트에 게재.</p>	<p>1. 낚시꾼 사건 관련 기사의 발행을 위한 인권위원회와 <i>Ontario Out of Doors</i> 잡지 편집인의 협의 지원.</p>	<p>1. 2008 년 5 월 14 일, OFAH 는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i>어류및야생동물법</i> 상의 괴롭힘 관련 조항을 더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함.</p>	<p>1. 특히 불법적 낚시와 관련하여 안전을 촉진하고 인종주의적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낚시꾼 및 일반과 협력.</p>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 년 4 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21. 온타리오 주 중국인낚시협회(Ontario Chinese Anglers Association)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동 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해당 없음

3. 동 협회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해당 없음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해당 없음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가 제시한 후속조치
<p>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대책 수립에 참여(피터버러 인종관계위원회와 협력):</p> <p>(a)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다른 지역사회 집단보다 불법 낚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고정관념 타파.</p> <p>(b) 낚시 중에 차별 및 증오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위한 안전 및 지원의 증진을 위해 노력.</p>	<p>1. 사건의 중대성에 관한 메시지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인종주의, 폭행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안내.</p>	<p>1. 낚시꾼이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아직 웹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았음.</p>	<p>1. 수립된 방안의 시행</p> <p>2. 낚시꾼 괴롭힘 사건을 OHRC 또는 경찰에 신고</p>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22.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 OHRC)

1. 방안이 시행되었나? 장기적 방안이라면, 현재 수립 중인가?

장기적 방안이 수립 중입니다.

2. OHRC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자원 및 자금을 투입했나? 시행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나?

예. 이 문제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계획 및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3. OHRC 에서 인권 원칙 및 반인종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대책을 시행했나?

예.

4.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종주의를 타파한다는 전반적 목표에 부응하는가?

예. 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안된 방안	합의 내용	2009년 3월 현재 진전상황	OHRC 가 제시한 후속조치
	<p>OHRC 는 다음과 같은 HCCWG 보고서 상의 추천안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MAG, MCSCS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안 7.1: MAG 및 MCSCS 와 공조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증오 및 편견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사회적 홍보운동 수립. 2. 추천안 7.3: MAG 및 MCSCS 와 공조하여 피해자 권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증오범죄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원 개발. 3. 추천안 7.4: MAG 및 MCSCS 와 공조하여 증오행위에 대해 일반을 교육하고 일깨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OHRC 는 MAG 및 MCSCS 와 사회적 홍보운동 수립에 관한 협의를 시작함. 4. 인종구분 및 반인종주의에 관한 교재의 개발을 위해 MNR 을 지원함. 5. Barbara Hall 위원장이 <i>온타리오 Out of Doors</i> 잡지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가 동 잡지 2008년 8월호에 게재됨. 6. 교육부는 사례연구 개발에 관한 자문 요청 참고자료를 OHRC 에 제공할 예정임. OHRC 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관계기관의 각종 대책 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 2. OHRC 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 폭행사건 조사 – 후속 보고서

2009년 4월

부록 C: 관계기관 대책 진전상황

	<p>위해 미디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보도 내용 검토.</p> <p>4. 인종구분에 관한 교육 실시, 반인종주의 자료 개발에 관하여 MNR 지원.</p> <p>5. <i>온타리오 Out of Doors</i> 잡지에 게재할 사실을 OFAH 에 제공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 작성을 위해 OFAH 와 협력.</p> <p>6. 요청이 있을 경우, 사례연구 개발 및 인종구분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 지원 제공.</p> <p>7. 2008 년도 낚시철 동안 유사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각종 대책 시행 지원. 연중내내 지속적으로 진전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p>	<p>남부지역 카톨릭 교육청에서 반인종주의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p> <p>7. OHRC 는 유사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각종 대책 시행에 대한 지원을 제의함.</p>	
--	---	---	--